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10. 14. 조지연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 10. 1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25. 1. 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
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1. 18.) 상정,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1. 21.)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 11. 24.) 상정, 소위심사보
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조지연의원)

지난 6월 24일 1차 리튬전지를 제조하는 (주)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하는 대형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음. 해당 사업장은 '21년 2월부터 '24년 2월까지 3년간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았음. 이 사고를 계기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미 감면받았던 산재보험료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음. 정부도 「외국인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강화 대책」(8.13)에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개편과 함께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를 추진한다고 발표하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사업주가 산재예방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를 인정받으면 산재보험요율을 감면해주는 산재예방요율제를 규정하면서, 감면된 보험료를 환수하는 기준으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만 규정하고 있음. 이에 (주)아리셀과 같이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았으나 사실상 형식적인 재해예방활동을 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이미 감면된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재해예방활동을 하도록 유인하고자 함(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생 략

4. 대체토론 요지

생 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생 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부대의견

없 음

9.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10.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 음

11. 기타 사항

없 음